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편집자 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 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상의 처벌조항 126개 중 79개 조항이 과태료 부과적용 조항임

또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같은 시·군·(자치)구 이내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더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지난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개정취지

그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 주요내용

현행 직무규정의 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고려, 위반횟수를 최근 2년 내 1~3차로 구분하여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했다.

또한,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규모별 감경기준 적용 시 최종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적용을 배제했다.

- 1차 위반 시 부과금액 비율을 다음기준에 따라 우

선 설정하고, 그에 따라 2·3차 비율 설정

▲ 시정지시 또는 경고 후 과태료 부과조항(44개) : 10%

▲ 작업(사용)중지 후 과태료 부과조항 등(12개) : 30%

※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인 경우 1:5:10, 30%인 경우 3:6:10 비율을 적용

※ 2차 위반 시 최종 부과금액이 현행 시정조치 후 부과되는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수준이 되도록 50%(1:5:10)로 설정

- 다만, 현행 직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 감독관의 검사·점검·질문 등에 대한 거부·방해,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은 현행 부과 최고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

###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예시

1:5:10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 :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 100만원(1차), 5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3:6:10인 경우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제2항) :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즉시부과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9조의2제1항) : 1,000만원(1차), 1,000만원(2차), 1,000만원(3차 이상)